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43
----------	---------

발의일자	2021. 3. 30.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신재화, 김향란, 박수자, 표주숙, 이흥희 의원

1. 제안 이유

-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의회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안 제4조)
- 라.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선정 및 활동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마. 협력 및 우수 체험수기·제안 선정 등(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보상(안 제9조)
- 사. 표창(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3. 29. ~ 4. 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견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청소년(이하 “참여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 및 보상)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